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 법 제2조제9호에서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제3조의3(자금이체 금융회사등)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조합
7.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9.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0.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의 전자금융업자 중 제3조의2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자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제15조제1항 중 “계정”을 “계정 또는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예금보험기금 또는”을 “예금보험기금,”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또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본문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 등”으로 한다.

제24조의6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관한 사무

제2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7(매입계약의 해제) ①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해제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입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 수단) 법 제2조제9호에서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u>
<u><신 설></u>	<u>제3조의3(자금이체 금융회사등)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 <u>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u> <u>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u> <u>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u> <u>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u>

	5. 「<u>농업협동조합법</u>」에 따른 <u>농협은행 및 조합</u> 6. 「<u>수산업협동조합법</u>」에 따른 <u>수협은행 및 조합</u> 7. 「<u>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체신관서</u> 8. 「<u>새마을금고법</u>」에 따른 새 <u>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u> 9. 「<u>한국산업은행법</u>」에 따른 <u>한국산업은행</u> 10. 「<u>중소기업은행법</u>」에 따른 <u>중소기업은행</u> 11. 「<u>산림조합법</u>」에 따른 조합과 <u>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u> 12. 「<u>전자금융거래법</u>」 제2조 <u>제4호의 전자금융업자 중 제3 조의2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자로서 위 원회가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u>
제15조(차입의 방법 등) ①공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보금 융회사별 <u>계정</u> 의 부담으로 자금 을 차입할 수 있다.	제15조(차입의 방법 등) ①----- ----- ----- <u>계정 또는 착오송금반 환지원계정</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사	③-----

가 예금보험기금 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차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 7. (생략)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① ~ ④ (생략)

⑤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다만,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중 보험금(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금보험기금,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또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1. ~ 7. (현행과 같음)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부보금융회사
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
등-----.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부당이득반환채
권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해제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입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가 정한다.